

# 김상천 형사소송법 고소한 노트

## 정오표 v. 1.0



## 05. 피의자 등

---

	직권주의	당사자주의
		소송 주도권 ◦ 당사자(검사, 피고인)

## 06. 수사의 단서

수상한 자 ⇨ 정지, 질문 등



고소권자 다수인 경우 ⇨ 1인의 경과는 타인에게 영향 X

## 07. 수사의 조건

고소(고발) 가능성

고소(고발) { 소추조건-0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{ 수사조건 X



참여

선임신고서 제출 → 변호인 되려는 자 ◦ 참여권 인정 X  
조서 기재 [ 변호인 의견 → 기명날인, 서명  
참여, 제한 → 조서 기재 (필요적)

피의자, 피고인	
임의적 (◦ 수사기관이 중단 가능) 1. 신체적·정신적 장애 2. 연령, 성별, 국적 등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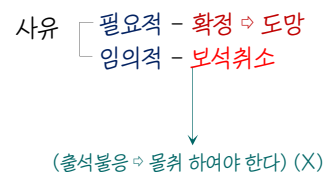


재체포 - 제한X



국가보안법  
⊕ 1회연장(+10일)  
⊕ 1회연장(+10일)  
-----  
총 50일







대가보관  
환부(피해자 환부)  
사전통지 X

## 13. 수사종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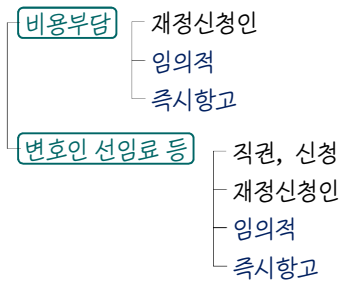
공소제기 여부  
구속, 석방  
재판결과 → 경과 X  
공판 일시,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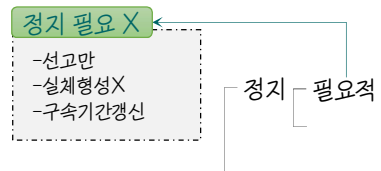
시험과목이 공석이면 결시



### 13. 수사종결

---







## 17. 법원

---

- 회 피 법관 스스로 신청 - 기피 절차 준용
- 법원 사무관
  - 전심 재판 관여 - 제척 사유 X
  - 간이기각 - 소속법관
  - 결정 - 소속법원 → 합의부 X
- 통역인
  - 사실혼 - 제척 X
  - 증언 - 제척 O - 통역조서 - 증거능력 X



## 19. 피고인

### 제4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

#### • 당사자 능력

자연인	O - 언제나 X - 사망
법인	O - 처벌규정 X - 소멸 → 판) 청산, 소송 중 - 소멸 X
X	공소기각 결정

#### • 소송능력

X	공판절차 정지
---	---------

## 23. 소송서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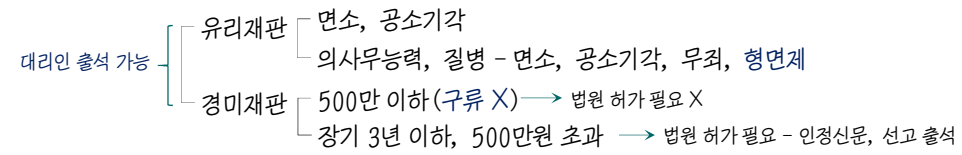
예외-판) [ 변론종결 전 허가  
방어권, 변호권 본질 침해 X  
↓  
(방어권, 변호권 본질 침해 0, 변론종결 전 허가 X  
⇨ 조서 증거능력 X)





## 24. 공판절차의 개요

---



즉결 - 벌금, 과료 (구류 X)

### 30. 자유심증주의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자백배제법칙

#### • 임의성 인정 v 임의성 부정 판례 비교

임의성 인정	임의성 부정
<p>①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.</p> <p>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을 송치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.</p> <p>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.</p> <p>④ 사법경찰관아...</p>	<p>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하고 이어서 진술서를 작성. 제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내용의 양심서 등을 작성.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기제가 있으나,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다.</p> <p>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, 그 후 검사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라든가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.</p> <p>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,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.</p> <p>④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깨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.</p> <p>⑤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</p> <p>⑥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로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.</p> <p>⑦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,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.</p> <p>⑧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절도)죄 대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.</p> <p>⑨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,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.</p> <p>⑩ 구속영장 없이 13여일 간 불법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깨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.</p> <p>⑪ 피의자신문에...</p>

## 31. 전문법칙

- ① 전문증거가 아니다.
- ② 오증사실 자체이다.
- ③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는다.
- ④ 검증조서에 제311조가 적용된다.  
(제312조나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.)
- ⑤ 대체물이 아니다.



의의

제312조, 제313조

공판기일, 공판준비기일 출석 × ⇨ 증거능력 부여

## 35. 중국재판

- 경합범
- 상경, 포괄일죄, 예비적 기재
- 일부 무죄, 일부 면소(공소시효 완성)
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
⇨ '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'라 주장  
⇨ 판단 X  
(위법성, 책임) 조각 - 구성요건 X [알리바이 X  
고의 X



	①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(관할의 <b>경합</b> )

상소권 회복 인정 0	상소권 회복 인정 X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변호인이 상소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</li> <li>② 선고 잘못들은 경우</li> <li>③ 교도소 담당 직원이 편의 X</li> <li>④ 거주지 변경 신고 X</li> <li>⑤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않아 송달받지 못한 경우</li> <li>⑥ 질병, 입원</li> <li>⑦ 사무소에 나가지 않아 송달 X</li> <li>⑧ 공동피고인의 기망</li> <li>⑨ 법원직원이 정식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</li> </ul>

적용X

③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파기 된 경우,  
환송 전 후

↳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작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 
검사가 부작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④ 다른 사건 (경합범)이 병합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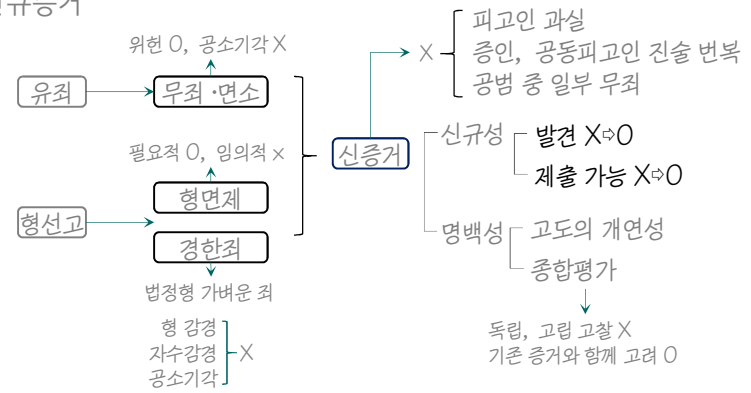




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있는 경우	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는 경우
피고인 ⇨ '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'	검사 ⇨ '사실오인 및 법리오해'

# 38. 비상구제절차

• 신규증거





## 38. 비상구제절차

---

- 법률 폐지, 위헌



•

비상상고 X	비상상고 O



자격에 관한 법령 [ 형 집행 종료/면제  
 형 선고유예/집행유예 선고 ] ⇨ 장래를 향하여 형 선고 X 간주  
 ↓  
 선고유예/집행유예제외한구법 ⇨ 위헌      예외) 선고유예 실효, 집행유예 실효, 취소



유죄판결 선고시에만 가능 → 유죄 판결과 동시에만 가능

(500만원 이하 X)  
사회봉사 — 300만원 이하 벌금, 과료 완납 X  
— 신청시기: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 
↓  
확정일부터 ~ 납부명령 고지받은 날(납부명령일 X)부터 30일 이내



- 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㉡ 법원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.
- ㉢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(7)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.
- 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,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㉥ 검사는 고소·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(7)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- ㉦ 지방경찰청 검사장·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재정신청서·의견서·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.
- ㉧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항소,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
- ㉨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- ㉩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(7)일 이내에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㉪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 원칙. 다만,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(7)일이 넘는 기간 정할 수 있다.
- ㉫ 피고인은 안내장을 포함한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㉬ 배상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(7)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.
- ㉭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는 (1)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\* 소년보호처분 - 7일내 항고